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 3. 22 선고 2022가단104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백성용, 전홍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진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3. 22.

주 문

- 가. 피고와 C(D생)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9. 12.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55,55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9. 12.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308,83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08,838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1. 12. 위 법원에서 ‘C은 원고에게 40,004,568원과 그중 21,560,041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44039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F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혼인하여 G, H, C 세 형제를 두었는데, 2018. 9. 12. 사망하였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는 9분의 3의 비율로, 망인의 자녀인 G, H, C은 각 9분의 2의 비율로 망인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와 G, H, C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8. 11. 23.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2018. 1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27530호로 2018. 9.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9분의 2 지분을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이전한 것은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위 협의분할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액수로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 이내인 11,308,83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직접 지급하는 가액배상의 방식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초한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와 C의 무자력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거나, 갑 제3, 6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2022. 5. 18.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C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2021. 4. 26. 기준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58,481,303원인 사실,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3,644,226원이었는데, C은 이를 상속지분의 비율로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12. 6.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42,303,000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35,131,00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의 가액은 7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가액도 이와 같은 액수일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소극재산[65,957,797원 = 58,481,303원 + (33,644,226원 ×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적극재산[18,763,111원 = (42,303,000원 + 35,131,000원 + 7,000,000원) × 2/9]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C과 피고의 사해의사

가)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C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인 피고가 그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이 상속인 중 1인인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1985. 8. 5. 망인과 혼인한 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2002. 4. 13.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주소로 하는 전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② C은 망인 및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서 살다가 2007. 11. 12.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집합건물로 이사한 후 2008. 12. 29. 무렵부터 배우자인 J과 함께 위 주소지 등에서 거주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와 망인의 혼인기간, 망인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 및 피고와 망인의 이 사건 건물의 전입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특별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취득유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C과 피고의 별거 개시 시기, C의 배우자와의 동거 개시 시기 등에 비추어, C은 장기간 피고와 떨어져 지내면서 독립적으로 가계를 꾸려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C의 어머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C의 재정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C의 상속지분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C 및 그 형제들은 망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유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장기간 거주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사정을 반영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부분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토지 지분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가)항에서 본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아무런 근저당권이나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원상회복은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C의 상속지분 부분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21. 10. 6.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20478호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K와 피고 및 C의 관계 등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피고가 C에게 원물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가액이 7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1,555,555원($= 7,000,000\text{원} \times 2/9$)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부분 중 C의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555,55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영현

별지